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군대파견 없이 현행법으로도 해외긴급구호 가능
재난지역 군대파견의 헌법적 근거 부족

발행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우진희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개요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4
1. 군대파견 없이 현행법으로도 해외긴급구호 가능	4
2. 재난지역 군대파견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 부족	5
결론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지난 12월 30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외긴급구호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에서 제시된 ‘법적근거 마련’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2013년 12월 5일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의 심사보고서에서도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을 밝힌 바 있어 재난지역 군대파견의 위헌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¹
- 이에 참여연대는 해외긴급구호 법률의 일부개정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며, 해외긴급구호 개정법률안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1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 군대파견 없이 현행법으로도 해외긴급구호 가능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가 먼저 국군부대를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 재난 상황이 닥친 이웃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일임. 그러나 정부는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구호 활동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물론 공병부대나 의료부대가 인도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같은 비용을 들일 경우 민간구급대와 전문업체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임.
- 현재 제정되어있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파견하도록 하고 있어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함.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2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게다가 지난 필리핀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파병동의안 제출 이전에 이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²에 따라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

- 2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을 파견한 바 있음.³

- 이와 같이 기존 법률이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시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조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국회 사전동의 없는 국군부대의 파견을 허용토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함.

2. 재난지역 군대파견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 부족

- 이번 개정안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 2013년 12월 5일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의 심사보고서에서 “동의안은 국군부대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⁴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재해지역 군대파견의 위헌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⁵
-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제1항)에 의거하여 징집제를 채택하고 있음.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대규모 군 인력을 징집하는 상황에서 군 본연의 임무나 목적이 아닌 일로 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군대의 본질적인 임무는 국토방위 수호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급과 복구 임무를 병행할 뿐 복구와 재건이 주된 임무는 아님. 부득이 평화유지 임무와 인도지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른바 UN PKO 법)’을 적용하면 족함.

-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 3 우리정부의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조조치 내역 (2014. 01 .23. 국회 정책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자료집 발췌)

총 지원규모	· 총 2,500만불 · 긴급구조대 파견 100만불, 현물지원 100만불, 국제기구를 통한 현금지원 300만불 · KOICA 사업형태로 향후 3년간 2,000만불 규모 무상원조 지원
긴급구조대	· 총 44명 · 선발대 5명(국립의료원 1명, 119구조단 2명, KOICA 2명) · 본대 39명(국립의료원 20명, 119구조단 14명, KOICA 2명, 외교부 3명)
국방부 지원	· 군수송기 2~3대(타클로반 체류 이재민 및 구호물자 수송) · 조종사, 정비사, 지원요원 등 46명
현지조사단	· 국군부대 파병 관련 현지상황 및 지원소요 파악을 위해 선발대 5명 등 17명 파견 (조사단 운용기간 : ‘13.11.25~11.30)

- 4 헌법 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5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5.

- 게다가 흔히 군부대의 동원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파견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더 적합한 경우에도 군대파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란 명목으로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소집된 군인들을 무분별하게 해외에 파견하기 보다는 국제개발원조 차원에서 긴급구호분야에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 양성과 장비 마련에 적극 투자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국회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

-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재난 지역에 신속히 국군부대를 파견하여 긴급구호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국군의 해외파병을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 재난 지역에서의 구호활동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 게다가 재난지역 긴급구호의 명목으로 비분쟁지역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군부대의 불필요한 파병을 부추기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단초를 제공할 위험이 큼.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첫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추진되었던 기존의 여러 해외파병 사례들에 이어 또 다시 헌법적 근거없이 군대의 해외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함.
 - 둘째, 현행 재난구호가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연구와 정책검토를 토대로 실질적인 원조와 인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군대의 해외파견을 촉진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될 수 없음.
 - 셋째, 국제인도지원 및 구호전문요원을 육성하고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함. 이것이 재난지역에 대한 군대 급파보다 국제사회에 더 긴요한 것일 수 있음.
 - 넷째, 해외파병의 근거도 없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파병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법률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원칙과 조건을 엄격히 제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헌법에 따라 파병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막아야 함. [참]

참여연대 정책자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4. 2. 5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우진희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